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농어촌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준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존속기한 지정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F.T.A(자유무역협정) 및 도하개발아젠다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농수산물의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어렵고 열악한 농어촌에 대하여 농어촌 발전기금을 융자지원 하므로써 생산력 향상과 친환경 영농으로 경쟁력 제고와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이나, 기금조성 목표액이 80억원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심도있는 심사후 조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 6. 질의 및 답변 :

- 문 : 농어촌발전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 : 2007년도 군출연금 2억 5천만원, 당항포수입 3억, 박물관수입 1억5천만원 등 7억원 정도이며, 2006년도 재원마련 계획은 없습니다. 2008년도 엑스포시 50억원, 2009년도 7억원 등으로 매년도 마다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문 : 금년도 당초세입예산에 132억원을 수입조치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입장객에 비하여 세입결함이 예상되며, 농어촌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2항의 농협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수산인들은 농협을 이용하기 어려워 농협, 수협, 축협으로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답 : 융자대상자를 정보 온라인으로 확인 하므로 별문제 없습니다

○ 문 : 용자 이율은 몇%입니까

● 답 :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는 2~2.5%입니다.

○ 문 : 자금지원은 F.T.A등으로 자금이 제일 필요한 시기이나, 10년후  
자금지원은 시기상 맞지 않다

● 답 : 인근 자치단체 12개 시군은 5년간 자금을 모아서 그후 시행 합니다

7. 토 론 : 없음

## 8. 심사결과

○ 2006. 6. 7일 농어촌발전기금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므로 제5대 의회  
구성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로 의결 하였습니다.